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78호

건설신기술 지정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 변위 측정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인프라안전㈜		
	주 소	우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H 비즈니스파크 C동 812호		
	전화번호	02-6954-2150	팩스번호	02-6954-2151
신청인(2)	법인명(성명)	탄탄안전㈜		
	주 소	우31769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33-16, 2층 201호 (읍내동)		
	전화번호	41-355-1024	팩스번호	02-462-6203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991호
- 명 칭 :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 변위 측정 기술
-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처리』 기술에 기반한 교량 변위 측정 및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하천 교량과 고가 교량의 하부조건과 관계없이 변위 측정이 가능하며, 측측기와 측측 타겟의 설치를 배제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성을 확보한 변위 측정 기술이다
- 신기술의 범위
Non-Scale 카메라 화소에 스케일을 부여하고 촬영된 교량의 특정 위치를 화소 단위로 추적하여 변위를 산출하는 비접촉 무타겟 실시간 변위 측정 시스템(카메라와 타겟간 거리 50m이내 적용)과 Non-Scale 화소에 스케일을 부여 하기 위한 레이저 구조광 프로젝션 시스템 및 제어 알고리즘을 포함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재하시험 계획수립 → 장비준비 → [외업] → 재하시험 결과정리
외업 : 현장이동 → <u>게이지 부착 및 점검</u> → <u>측정</u> → <u>해체</u>
신기술 품
1. 현장이동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6.선택과업 비용 기준 - 9.비파괴재하시험 참조
2. 게이지 부착 및 점검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6.선택과업 비용 기준 - 9.비파괴재하시험의 83%로 계상
3. 측정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6.선택과업 비용 기준 - 9.비파괴재하시험 참조 [주] 측정 절차에 소요되는 장비 및 재료비는 별도계상한다.
4. 해체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6.선택과업 비용 기준 - 9.비파괴재하시험의 76%로 계상

5.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